

2022학년도 1학기 일반전과 시행 안내

■ 전과시행 일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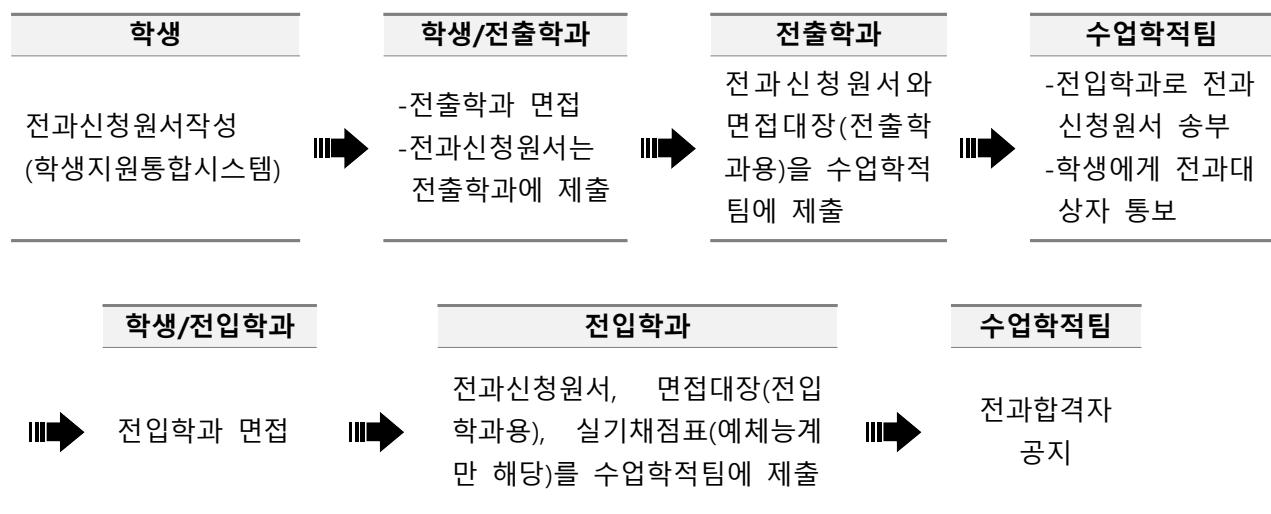
내 용	일 시	비 고
원서작성 및 전출학과 면접	2022.01.03(월) ~ 01.05(수) 10:00 ~ 16:30	- 학생지원통합시스템에서 원서작성 및 출력 후 원서를 지참하여 전출학과(본인 소속 학과)에 제출 및 면접 실시
전입학과 면접	2022.01.11(화) ~ 01.12(수) 10:00 ~ 16:30	- 전출학과(본인 소속 학과)에서 합격/선발된자에 한하여 전입학과에서 면접 실시 - 언어청각치료학과로의 전과를 희망하는 자는 공인영어성적(TOEFL, TOEIC, TEPS) 제출 시 가산점 부여
실기고사	2022.01.11(화) ~ 01.12(수) 10:00 ~ 16:30	- 예체능계열 학과(전입학과):학과별 상이
합격자 발표	2022.01.19(수) 이후	- 홈페이지 학사공지에 게재

※ 2022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자가 일반전과를 희망하는 경우 위의 일정을 준수하여 전과 원서 접수기간 이전에 복학신청을 한 후 전과신청을 하여야 함(휴학생은 전과신청 불가)

■ 지원자격

- 전과 지원당시 1학년 1학차 이상 재학생(다만, 자율전공학부를 제외한 학부로 입학한 경우에는 지원당시 1학년 2학차 이상 재학생)

■ 진행절차



■ 사정(전형)방법

- 전출학과(전공) : 해당 학과(전공)에서 정한 기준(면접 등)에 따름
- 전입학과(전공)

구 분	사정(전형) 방법
일반 학부 및 학과(전공)로의 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전과 선발기준은 해당 학과(전공)에서 정한 면접, 성적 등의 심사기준에 따름▪ 면접은 A,B,C,D로 평가하며, "D"는 불합격 처리함
예·체능계열 학과(전공)로의 전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▪ 실기고사 성적순으로 선발함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실기고사 40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함- 실기고사는 본교 편입생 선발과 동일한 과제 또는 학과에서 지정하는 과제로 함

■ 전과 허용 인원 및 제한사항

- 일반학과로의 전과 : 전출은 제한을 두지 않으며, 전입의 경우 모집단위의 학년별 입학정원의 100% 이내로 제한
 - ※ 2학년 진급자: 2021학년도 입학정원 적용, 3학년 진급자: 2020학년도 입학정원 적용, 4학년 진급자 : 2019학년도 입학정원 적용
 - ※ **전과신청 가능인원이 초과할 경우 전입학과 면접(예체능의 경우 실기포함)에 따라 최종 합격인원이 정해질 수 있으며, 동시에 지원자 수와 관계없이 전입학과 면접(예체능의 경우 실기포함) 점수에 따라 전과가 탈락될 수 있음**
- 물리치료학과, 방서산학과, 사범대학 소속 학과(교육학과, 수학교육과 제외) : 여석없음
- 안경광학과 : 여석있음(2학년 9명 / 현재 1학년 2학차 또는 2학년 3학차 재학생 지원 가능)
- 교육학과 : 여석있음(4학년 1명 / 현재 3학년 6학차 또는 4학년 7학차 정원 내 재학생 지원 가능)
- 수학교육과 : 여석있음(4학년 4명 / 현재 3학년 6학차 또는 4학년 7학차 정원 내 재학생 지원 가능)
- 유스티노자유대학 소속 학과, 신학부, 의예(학)과, 약학부, 간호학과, 연계전공, 융합전공, 모집이 중지된 학과로의 전과는 불가함
- 학부 입학생의 경우, 전공배정 후 모집단위 내의 타학과로 전과신청 가능함
- 편입생, 미졸업생은 전과 대상에서 제외됨

■ 기타사항

- 교과이수
 - 전과한 학생은 「학칙 시행세칙」 제43조에 의해 전과가 허가된 학과(전공)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함
 - 전과 이후 이전 소속 학과(전출학과)에서 취득한 전공학점은 원칙적으로 일반선택 학점으로만 인정함. 다만, 이미 취득한 학점 중 전입학과의 전공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하여 전공성적 인정이 필요한 경우 전입학과의 심사를 거쳐 전공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음

- 장학금 수혜제한 : 전과가 허용된 학생은 「장학금 지급 규정」 제9조제4항에 의해 전과 당해학기의 장학사정에서 제외함
- 전입학과에 전과를 하고자 학생과 동일한 학년 및 학차에 재적 중인 학생이 있어야 함
- 교직이수예정자가 전과할 경우에는 교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. 다만, 사범대학 내에서 상호 전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함

대구가톨릭대학교 교무처장